

| | |
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
| 의안번호 | 제 682 호 |
| 의 결 연 월 일 | 년 월 일 (제 회) |

충청북도 소방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조례안

| | |
|-------|--------------|
| 제 출 자 | 충 청 북 도 지 사 |
| 제출연월일 | 2021년 4월 13일 |

법무혁신담당관 심사를 마침

충청북도 소방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조례안

| | |
|----------|-----|
| 의안 번호 | 682 |
|----------|-----|

제출연월일 : 2021년 4월 13일

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1. 제안사유

- 「소방재정지원 및 시·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시행령」 공포 사항을 (대통령령 제31025호, 2021. 1. 1. 시행) 반영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「소방재정지원 및 시·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시행령」 제5조제1항 제2호나목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
- 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방정책사업비계정으로의 일반회계 전입금은 「지방세기본법」에 따른 보통세의 1천분의 5이상으로 한다.

3. 의안전문 : 붙임

4. 신·구조문 대비표 : 해당없음

5. 관계법령 발취 : 붙임

6. 비용추계서 : 붙임

충청북도 소방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소방재정지원 및 시·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시행령」 제5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전입금액) 「소방재정지원 및 시·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시행령」 제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충청북도 일반회계에서 소방정책사업비 계정으로 전입하는 금액은 「지방세기본법」에 따른 보통세의 1천분의 5 이상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폐지) 「충청북도 소방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」를 폐지한다.

제3조(소방특별회계에 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「충청북도 소방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」에 따라 설치된 소방특별회계는 「소방재정지원 및 시·도 소방특별회계설치법」 및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소방특별회계로 본다.

관련법령 발취

□ 소방재정지원 및 소방특별회계설치법

[법률 제16771호, 2019. 12. 10., 제정]

제6조(소방정책사업비계정의 세입과 세출) ① 소방정책사업비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소방안전교부세 중 제5조제1항제1호를 제외한 금액에서 소방분야에 해당하는 금액
2. 제7조에 따른 시·도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
3. 지역자원시설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
4. 소방사무 관련 국고보조금과 다른 특별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
5. 소방사무 관련 법령 및 조례 위반자로부터 징수한 과태료,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
6. 소방사무 관련 법령 및 조례 이행에 따른 각종 수수료 수입
7. 그 밖의 수입금

부 칙

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□ 소방재정지원 및 소방특별회계설치법 시행령

[대통령령 제31025호, 2020. 09. 22., 제정]

제5조(시·도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)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(이하“시·도”라한다) 일반회계에서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소방특별회계(이하“소방특별회계”라 한다)로 전입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인건비계정으로의 전입금: 매 회계연도의 소방공무원 인건비 총액에서 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의 금액을 제외한 금액
2. 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방정책사업비계정으로의 전입금: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
 - 가.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 및 경기도의 경우: 해당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 또는 도지사가 정하는 금액
 - 나. 도(경기도는 제외한다)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: 「지방세기본법」에 따른 보통세의 1천분의 5(해당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소방청장과 협의하여 따로 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) 이상의 범위에서 해당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소방특별회계에 관한 적용례) 이 영은 2021회계연도 소방특별회계 예산안을 편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□ 지방세기본법 [법률 제17768호, 2021. 1. 1., 일부개정]

제7조(지방세의 세목) ② 보통세의 세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취득세
2. 등록면허세
3. 레저세
4. 담배소비세
5. 지방소비세
6. 주민세
7. 지방소득세
8. 재산세
9. 자동차세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(단서 생략)

충청북도 소방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

1. 사업개요

- 소방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운용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「소방재정지원 및 시·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시행령」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정함.

2. 비용 발생 요인 : 소방특별회계 정책사업비 계정의 재원

3. 관련조문

- 제2조(전입금액) 「소방재정지원 및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시행령」 제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충청북도 일반회계에서 소방정책사업비계정으로 전입하는 금액은 「지방세기본법」에 따른 보통세의 1천분의 5 이상으로 한다.

4. 비용 추계결과

가. 재정수반요인 : 「소방재정지원 및 시·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시행령」 제5조 제1항 제2호 나목

나. 추계의 전제 : 연도별 보통세 대비 정책사업비 전입비율

다. 추계의 결과 : 최근 3년간 정책사업비 전입금

(단위 : 백만원)

| 구 분 | 2018년 | 2019년 | 2020년 | 2021년 | 4년 평균 |
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
| 전 입 금 | 9,355 | 11,905 | 1,231 | 20 | 5,628 |
| 보 통 세 | 839,999 | 1,027,688 | 1,189,926 | 1,164,724 | 1,055,584 |
| 전 입 비 율 | 1.114% | 1.158% | 0.103% | 0.002% | 0.594% |

※ 정책사업비 산출 : 일반회계전입금 - 인건비(보수, 성과상여금, 직급보조비)
전입비율 = 정책사업비 전입금 / 보통세

라. 재원조달방안 : 보통세(일반회계 전입금)

5. 연도별 비용추계서 : 예측불가(後년도 정책사업비 판단 곤란)

6. 작성자 : 충청북도 소방본부 소방행정과장 임병수